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. 12. 15 선고 2021가단5259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11. 24.

판 결 선 고 2021. 12. 1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C 전 814㎡ 중 별지 도면 표시 가, 나, 다, 라,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㉔ 부분 106㎡ 지상 철파이프조 건물을 철거하고,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고양시 덕양구 C 전 814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에 관한 등기부에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95. 9. 16. 접수 제91172호로 D의 원고에 대한 1995. 9. 1.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기재되어 있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, 나, 다, 라,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㉠ 부분 106㎡ 지상에 있는 철파이프조 건물(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다. 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 한다)을 관리사용하고 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자는 등기원인에 의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(대법원 1996. 10. 29. 선고 96다19338 판결),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,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(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D이 허무인이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었고,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전 소유자들로 기재되어 있는 E, D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(생년월일)가 모두 ‘F’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,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D이 허무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).

3.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망 G이 1995. 10.경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이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8. 5.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는바, 따라서 피고는 점유취득시효의 권리자인 망 G들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, 원고는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.

살피건대, 망 G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사실 및 피고가 망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이를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, 을 제5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1995. 10.경 건축되어 그에 따른 망 G의 이 사건 건물 대지 부분에 관한 점유로써 그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동원

별지

도면



